

	<h2 style="margin: 0;">수강신청 운영규칙</h2>		규정번호	3-3-1
			제정일자	1989.09.01
			개정일자	2016.06.01
			개정번호	Ver.7
			총페이지	2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칙은 학칙 제34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30조에 의한 수강신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수강신청범위)** ① 전문학사과정의 한 학기 수강신청 범위는 재수강 과목 및 교직과목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 24학점 이하로 한다. 다만, 졸업예정학기 수강신청자 중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는 12학점 이상 24학점 이하로 한다. <개정 2016.06.01.>

②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한 학기 수강신청 범위는 재수강 과목을 포함하여 10학점 이상 18학점 이하로 한다.

③ 동일과목의 중복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.

**제3조(수강신청정정)** 수강신청 정정 및 취소는 6학점 이내에 한하여 허용하며 학기개시 후 공고되는 기간 내에 한한다. 다만, 정정기간 공고 이후 복학자 및 취업 등의 사유로 이동 수업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**제4조(재수강)** ① 재수강 신청학점 범위는 24학점에서 해당학과 또는 전공의 해당학기 필수과목 학점 합계를 제외한 범위 이내로 한다.

② 재수강 대상 기 취득 학점은 C+급 이하로 한다.

**제5조(수강신청 불인정)** ① 동일한 과목을 중복신청하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.

② 수업시간이 서로 중복되는 교과목 수강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.

**제6조(폐강기준)** 강좌별 폐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이론강좌(생활스포츠 포함) : 20명
2. 실험실습강좌 : 20명

**제7조(수강신청절차)** 수강신청 절차는 학기마다 별도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.

**제8조(인원제한 강좌)** 수강신청 시 인원제한과목(실험, 실습, 제도 및 타학과 수강과목)은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수강신청한다.

**제9조(규칙의 개정)** 본 규칙의 개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허락을 받아 개정한다.

**부 칙**

- (1) (개정) 이 규칙의 개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얻어 개정한다.
- (2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